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소 장

원 고 위민 온 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Women on Web International Foundation)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1 영 스트리트, 스위트 1801 (1 Yonge Street, Suite 1801, Toronto, Ontario, Canada)
대표자 이사 리차드 오웬스(Richard Owens)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40 , 11층 (역삼동, 경원빌딩)
담당변호사: 양규응, 장현재
(전화: 02-3477-2103 팩스: 02-3477-2975)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정연주

열람용

시정요구처분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12. 13.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드림라인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에 대하여 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 처분 중 http://womenonweb.kr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http://womenonweb.kr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합니다.)를 운영하는 캐나다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사건 웹사이트는 사람들이 안전한 임신 중단 방법에 접근하도록 지원하고, 여성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며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원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경구피임약, 응급피임약, 임신중절 의약품(이하 통칭하여 '임신중절 의약품 등'이라 합니다.)을 우편으로 제공하는 한편, 피임, 응급 피임 및 의약품 임신중단 등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고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청[1]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참조).

[1] 피고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방통위법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 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 형법 등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동법 제 26 조 제 4 항). 그리고 국가로부터 피고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의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됩니다(동법 제 28 조, 제 29 조).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2.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1. 12. 13. 이 사건 웹사이트가 일반인에게 임신중절 의약품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 제4호를 적용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등 9개 망사업자들[2](이하 '이 사건 망사업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 하라는 시정요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제3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중 '회의발언내용' 항목 4면, 5면; 처분서는 원고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가 약국개설자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 사건 망사업자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내에 유통시키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

[2]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드림라인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 동법 제 93 조 제 1 항 제 7 호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참조).

또한 방통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방통위법 제21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의 시정요구를 하려는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은 실질적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어떠한 사전통지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의견진술의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국내 웹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문의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가 약국개설자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정보'를 유통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웹사이트는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고, 의약품 불법판매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대부분은 의약품을 이용한 피임, 낙태의 방법과 과정, 임신중단 의약품 등의 복용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고(갑 제3호증 이 사건 웹사이트 캡쳐화면), 의약품 '판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u>이 사건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대부분은 약국개설자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u>

한편, 많은 여성들[4]이 다양한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현재까지 형법, 모자보건법 등에 관한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박한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단 약물 암시장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단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2021. 6. 27. 자 "잠자는 '낙태법' 국회 뒷짐에 여성·의료계 피해" 기사, 갑

[4] 2018 년 이루어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 10,000 명 중 성경험 여성은 7,320 명(73%)이고, 그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 명으로 성경험 여성의 10.3%에 달하였습니다(갑 제 4 호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 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제6호증 2022. 2. 11. 자 “낙태 입법공백 2년 9개월… 임신중지 여성, 불법 낙태약·병원 찾아다녀” 기사 참조).

임신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원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중 일부 정보를 통하여 임신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진의 문진을 거쳐 여성들에게 세계보건기구(WHO)가 자가약물 낙태를 위하여 권장하는 안전한 임신중절 의약품 등[5]을 제공[6]하였을 뿐입니다(갑 제7호증 2018. 6. 11. 자 “임신중단약 구하러 ‘네덜란드 피난처’까지 찾아야 하는 여성들 기사, 갑 제8호증 이 사건 웹사이트 후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708명의 여성에게 임신중단 의약품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임신 중단을 도왔습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임신중절 의약품 등 제공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및 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임신중절 의약품 등의 제공에 관한 일부 정보를 두고 ‘범죄를 목적으로 한 정보’라고 경솔하게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

[5]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미소프로소톨(Misoprostol) 등

[6] 원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이용자로부터 임신중단 의약품 등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웹사이트 이용자는 단지 언제든지 자발적인 액수의 기부금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기부금은 당연히 강제되지 않으므로, 기부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임신중단 의약품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사법 제 2 조 제 1 호는 의약품의 ‘판매’에는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수여(授與)’도 포함하고 있어, 현행법상 약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결국 이 사건 웹사이트가 약사법 위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습니다.

설령 이 사건 웹사이트가 유통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특정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은 해당 웹사이트를 인터넷상에서 아예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적법한 다른 정보의 유통까지 제한하게 되므로,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개별 정보 중 일부가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웹사이트의 체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웹사이트 전체가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위반하는 정보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참조).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시정요구 처분을 함에 있어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최소규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동조 제2항 제1호가 '위반의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의의 고려요소로 삼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또한 이 사건 웹사이트는 인터넷도박 사이트나 성매매알선 사이트와 같이 사이트의 개설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웹사이트는 임신중단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임신중단 등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에 관한 다양하고 적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전체가 약사법 위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제작의도, 이 사건 웹사이트의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이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한 것입니다.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을 내린 후, 여성들의 건강과 성적 권리 및 재생산 권리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승인 및 권장하면서 원격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전문가의 정보와 지원을 받는다면 12주차까지 전문의료인의 의료행위나 직접적인 감독 없이도 가정에서 임신한 여성 스스로 낙태를 시행을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신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이 전면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안전한 임신 중단을 원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임신 중단에 관한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단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조차 완비되지 않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 위반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접근차단 조치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라는 공익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합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제3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2.	갑 제2호증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3.	갑 제3호증	이 사건 웹사이트 캡쳐화면
4.	갑 제4호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5.	갑 제5호증	2021. 6. 27. 자 잠자는 '낙태법' 국회 뒷짐에 여성·의료계 피해 기사
6.	갑 제6호증	2022. 2. 11.자 낙태 입법공백 2년 9개월… 임신중지 여성, 불법 낙태약·병원 찾아다녀 기사
7.	갑 제7호증	임신중단약 구하려 '네덜란드 피난처'까지 찾아야 하는 여성들 기사
8.	갑 제8호증	이 사건 웹사이트 후기

열람용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소송위임장
3. 담당변호사지정서

2022.03.1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
장현재

서울행정법원 귀중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회 의 록

□ 회 의 명 : 제3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 일 시 : 2021. 12. 13. (월) 14:00

열람용

□ 장 소 : 19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황성욱 위원장
옥시찬 위 원
이광복 위 원
김우석 위 원
김유진 위 원(5인)

□ 불참위원 : 없 음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제3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4. 전차회의록 확인

○ 2021년 제37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5. 의결사항

가. 법질서 위반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21-통신39-148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339건(심의번호 법보-21-39-0001 외 338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146건(심의번호 법보-21-39-0339 외 145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1,997건(심의번호 법보-21-39-0377 외 1,996건)

나. 사회법익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21-통신39-149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316건(심의번호 사보-21-39-0001 외 315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62건(심의번호 사보-21-39-0172 외 61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773건(심의번호 사보-21-39-0194 외 772건)
- 해당없음 43건(심의번호 사보-21-39-1152 외 42건)

다. 음란·성매매 및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21-통신39-150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3건(심의번호 청보-21-39-0001 외 12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237건(심의번호 청보-21-39-0003 외 236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2,095건 (심의번호 청보-21-39-0004 외 2,094건)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 시정요구 표시의무 이행 6건(심의번호 청보-21-39-2330 외 5건)
- 해당없음 771건(심의번호 청보-21-39-2352 외 770건)

라.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21-통신39-151호)
- 시정요구 접속차단 27건(심의번호 저대-21-39-001 외 26건)

6. 기 타

※ 차기회의는 2021년 12월 16일(목) 10:30에 개최하기로 함.

7. 폐 회 (14:20)

열람용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제3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황성욱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도성 통신심의국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황성욱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3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황성욱 위원장
- 회의는 모두 공개하겠고요. 방청 신청자는 없습니다.

4. 전차 회의록 확인

○ 황성욱 위원장
- 전차 회의록 확인해주시고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5. 의결사항

가. 법질서 위반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21-통신39-148호)

○ 황성욱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법질서 위반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해 주십시오.

○ 탁동삼 법질서보호팀장
- <의결사항 가> '법질서 위반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사행행위' 2,184건, '불법금융' 267건, '개인정보 침해' 29건, '사기' 2건 등 총 2,482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행행위' 정보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0001번>~<2019번>까지 2,019건은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승자투표권, 복권 등을 발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2020번>~<2184번>까지 165건은 사행성게임 등에 재물을 걸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고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영업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정보는 사행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으로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6호, 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7조제1호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0001번>~<0338번>, <2020번> 등 339건은 '해당 정보의 삭제', 심의번호 <0339번>~<0376번>,<2021번>~<2070번>까지 88건은 '이용해지', 심의번호 <0377번>~<2019번>, <2071번>~<2184번>까지 1,757건은 '접속차단'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 탁동삼 법질서보호팀장
- 8페이지입니다. '불법금융' 정보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2185번>~<2224번>까지 40건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영위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게시한 내용으로 미등록 대부업 및 작업대출 정보입니다. 심의번호 <2225번>~<2249번>까지 25건은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매출가장 또는 할인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알선하는 내용으로 속칭 카드깡을 제공·알선하는 정보입니다. 심의번호 <2250번>~<2451번>까지 202건은 휴대전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매출가장 또는 할인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알선하는 내용으로 속칭 휴대폰깡을 제공·알선하는 정보입니다. 상기 정보는 미등록 대부업 등의 영위 및 문서의 위·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신용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으로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7조제1호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2192번>~<2194번>, <2225번>~<2238번>, <2250번>~<2286번>까지 54건은 '이용해지', 심의번호 <2185번>~<2191번>, <2195번>~<2224번>, <2239번>~<2249번>, <2287번>~<2451번>까지 213건은 '접속차단'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 탁동삼 법질서보호팀장

- 11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정보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2452번>~<2479번>까지 28건은 주식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하며 연락처를 게시한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2480번> 1건은 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보를 도용하여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영업 주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착오를 야기하여 타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으로 도용당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였습니다. 상기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거짓 표시·광고 행위 및 신용훼손·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7조제1호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2452번>~<2454번>, <2480번> 등 4건은 '이용해지', 심의번호 <2455번>~<2479번>까지 25건은 '접속차단'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 탁동삼 법질서보호팀장

- 14페이지입니다. ‘사기’ 정보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2481번> 1건은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등 형법상 사기행위에 이용된 사이트이며 심의번호 <2482번> 1건은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며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해당 비용을 편취하는 등 형법상 사기행위에 이용된 사이트입니다. 2건 모두 경찰수사를 통해 피해 및 범죄사실이 확인된 사안으로서 세부 피해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기 정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7조제1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2481번>~<2482번>까지 2건에 대해 ‘접속차단’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나. 사회법익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21-통신39-149호)

○ 황성욱 위원장

- 다음 <의결사항 나> ‘사회법익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해 주십시오.

○ 양귀미 사회법익보호팀장

- <의결사항 나> ‘사회법익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개요입니다. 금일 심의대상은 ‘의약품 판매’ 271건, ‘마약류 매매’ 775건, ‘의약외품’ 10건,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95건 등 총 1,194건입니다. 3페이지 주제별 안건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0001번>~<0271번>까지 ‘의약품 판매’ 관련 27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감기약, 무좀약 등의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내용으로 이용자는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판매자의 연락처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 및 구입이 가능하며 이는 의약품 판매 가능인 및 장소 등을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7조제4호이며 참고법률은 「약사법」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심의번호 <0001번>~<0171번>까지 171건은 ‘해당 정보의 삭제’, 심의번호 <0172번>~<0193번>까지 22건은 ‘이용해지’, 심의번호 <0194번>~<0271번>까지 78건은 ‘접속차단’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 양귀미 사회법익보호팀장
- 6페이지입니다. 심의번호 <0272번>~<1046번>까지 '마약류 매매' 관련 77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이 금지된 마약류 및 임시 마약류를 매매한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 거래 방법 등을 게시하는 내용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7조제4호이고 참고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심의번호 <0272번>~<0359번>까지 88건은 '해당 정보의 삭제', 심의번호 <0360번>~<1046번>까지 687건은 '접속차단'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 양귀미 사회법익보호팀장
- 10페이지입니다. '의약외품' 관련 10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047번>~<1056번>의 정보는 연고제, 치약제, 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성능 등에 대해 과장하거나 스프레이, 마스크 등 공산품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7조제4호이고 참고법률은 「약사법」입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심의번호 <1047번>~<1056번>까지 10건 모두 '해당 정보의 삭제'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 양귀미 사회법익보호팀장
- 13페이지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9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057번>~<1151번>까지 95건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학원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 또는 광고하거나 학원 등의 밖에서 유상 운전교육을 제공, 알선, 조장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운전학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원은 설립·운영하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7조제4호이고 참고법률은 「도로교통법」입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심의번호 <1057번>~<1103번>까지 47건은 '해당 정보의 삭제', 심의번호 <1104번>~<1143번>까지 40건은 '이용해지', 심의번호 <1144번>~<1151번>까지 8건은 '접속차단'으로 각각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 양귀미 사회법익보호팀장
- 심의번호 <1152번>~<1194번>까지 43건은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정보로 신고되었으나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정보로 판단되어 '해당없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다. 음란·성매매 및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21-통신39-150호)

○ 황성욱 위원장
- 다음 <의결사항 다> '음란·성매매 및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해 주십시오.

○ 고현철 청소년보호팀장
- <의결사항 다> '음란·성매매 및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금일 심의대상은 '음란' 정보 1,875건, '성매매' 정보 448건, '청소년유해매체물' 28건 등 총 3,122건입니다. '음란' 정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0001번>~<1836번>까지 1,836건은 남녀의 성기 등 성적 부위 또는 성행위 등을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심의번호 <1837번>~<1838번>까지 2건은 자극적인 성적표현 및 성기에 관한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심의번호 <1839번>~<1847번>까지 9건은 동물과의 성행위 등 비정상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심의번호 <1848번>~<1850번>까지 3건은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을 사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용해 여성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심의번호 <1851번>~<1875번>까지 25건은 성적 부위 또는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정보를 매개·광고·선전하는 내용으로, 이 정보들은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의 유통 및 광고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제1호가목·나목·사목·자목, 제9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의번호 <0001번>~<0002번>까지 2건은 '해당 정보의 삭제', 심의번호 <0003번> 1건은 '이용해지', 심의번호 <0004번>~<1875번>까지 1,872건은 '접속차단'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 고현철 청소년보호팀장
- '성매매' 정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876번>~<2311번>까지 436건은 성행위 문구와 함께 대가, 연락처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내용, 심의번호 <2312번>~<2323번>까지 12건은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정보 등을 매개·광고·선전하는 내용으로, 이 정보들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제3호차목, 제9조이며 참고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의번호 <1876번>~<2109번>, <2312번> 등 235건은 '이용해지', 심의번호 <2110번>~<2311번>, <2313번>~<2323번>까지 213건은 '접속차단'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 고현철 청소년보호팀장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및 광고' 정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2324번>~<2335번>까지 12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인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내용, 심의번호 <2336번>~<2351번>까지 16건은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으로, 이 정보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에 따른 법적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5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제3호자목이며 참고법률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의번호 <2336번>~<2346번>까지 11건은 '해당 정보의 삭제', 심의번호 <2347번> 1건은 '이용해지', 심의번호 <2324번>~<2329번>, <2348번>~<2351번>까지 10건은 '접속차단', 심의번호 <2330번>~<2335번>까지 6건은 '표시의무 이행'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 고현철 청소년보호팀장
- 심의번호 <2352번>~<3122번>까지 771건은 '음란·성매매' 정보 등으로 신고 되었으나 사안이 미약하거나 심의규정상 위반내용을 확인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라.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21-통신39-151호)

○ 황성욱 위원장
- 다음 <의결사항 라>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해 주십시오.

○ 정희영 저작권침해대응팀장
-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결주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저작권 침해' 정보 27건이 되겠습니다. 심의번호 <001번>~<027번>은 기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불법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대체 사이트 내용입니다. 상기 정보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제4호마목입니다. 참고법률은 「저작권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의번호 <001번>~<027번>에 대해서 '접속차단'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 황성욱 위원장
- 전원 의결하겠습니다.

6. 기 타

○ 황성욱 위원장
- 의결안건 모두 마쳤고요. 차기 회의 일정 안내해주십시오.

○ 이승만 통신심의기획팀장
- 차기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7. 폐 회

○ 황성욱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 제3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4시 20분 폐회】

갑 제1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Warning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정보(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것이오니
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단안내페이지(warning.or.kr)를 도용한 파밍사이트가 발견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단안내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분야	담당기관	전화번호
불법 의약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21
불법 의약외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21
불법 식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14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14
불법 화장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06
불법 의료기기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06
불법 마약류 매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6

◎ 운영자 이의신청 안내

사이트 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단사유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보내용에 따라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
사회법익보호팀 (마약류)	(02)3219-5146
사회법익보호팀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02)3219-51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갑 제2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B,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WOMEN ON WEB KR

상담

Women on Web KR 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여성들을 지원합니다. 임신(9주 미만)의 건강한 여성이라면 온라인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단 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 등기로 발송될 것입니다. 정보를 잘 숙지하고 (드물지만) 합병증에 대비하여 응급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안전하게 자택에서 의약품을 이용한 임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해 더 알아보기

열람용

갑 제3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늘,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질문과 답변의 개요

협람용

목차

1. 의약품 낙태는 무엇입니까?
2. 의약품 낙태는 무엇입니까?
3. 낙태 유도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4. 스스로 의약품에 의한 낙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가요?
5. 낙태유도제 복용은 위험한가요?
6. 낙태 유도제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7. 합병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8. 미래의 원하지 않는 임신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낙태가 필요한 당신, 저널리스트 혹은 이곳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한 대답과, 과학 논문을 참조한 심도 있는 대답이 될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최근 과학적 리서치에 의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낙태는 무엇입니까?

의약품 낙태란 임신 초기부터 임신 10주까지 외과적 수술이 아닌 혼합 의약품 복용으로 임신 종결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낙태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가지 다른 낙태 유도제의 복용을 말합니다. 해당 의약품은 포궁 내 수정물의 인위적 배출을 유도합니다.

의학적 근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WHO의 필수 의약품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합니다.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차단될 시 포궁 벽에 난자 수정이 어려워지며, 포궁이 수축하게 됩니다. 미소프로스톨은 포궁의 수축을 촉진시켜 포궁 내 수정물의 배출을 유도합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혼합 복용은 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임신 초기 중절법입니다. 복용 반응으로는 복통과 월경과 비슷한 출혈의 연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의 굉장히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병원 가까이 거주 시 집에서 의약품 낙태를 시행해도 안전하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낙태는 무엇입니까?

의약품 낙태란 임신 초기부터 임신 10주까지 외과적 수술이 아닌 혼합 의약품 복용으로 임신 종결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낙태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가지 다른 낙태 유도제의 복용을 말합니다. 해당 의약품은 포궁 내 수정물의 인위적 배출을 유도합니다.

의학적 근거:

갑 제3호증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WHO의 필수 의약품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늘,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혼합 복용은 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임신 초기 중절법입니다. 복용 반응으로는 복통과 월경과 비슷한 출혈의 연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의 굉장히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병원 가까이 거주 시 집에서 의약품 낙태를 시행해도 안전하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낙태 유도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12주 이하의 임신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약품을 복용하십시오:

- 미페프리스톤 1정을 삼켜 복용하십시오.
- 24시간 후 미소프로스톨 4정을 혀 아래에 놓고 의약품이 용해될 때까지 30분간 유지합니다. 침은 삼켜도 됩니다. 30분 후 남은 잔여물은 삼켜도 됩니다.
- 만약여분의미소프로스톨을받으신여성의경우에, 예상했던것보다출혈이적고, 낙태가유발되는것에어떠한의구심이생긴다면, 3 시간후두번째복용량Misoprostol 2 정을혀아래에놓고30 분간정제가녹을때까둡니다. 이때혀아래에남겨진잔여물은뱉으셔도무방합니다. 그러나만약출혈이시작되지않고당신에게여분의misoprostol이남아있다면그후3시간마다2정의misoprostol을최대한총5회를더복용할수도 있습니다.우리는혀아래놓고미소프로스톨을용해시켜복용하기를강력히조언합니다. 이방법은당신이병원을방문하게될때를대비하여의약품의흔적이남지않는방법입니다. 미소프로스톨의복용을확인하기위한혈액검사등은존재하지않으며, 낙태를시도했다는 증거를입증할방법은없습니다.

스스로 의약품에 의한 낙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가요?

아니오, 어렵지 않습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용법과 용량에 맞춰 스스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복용법은 다른 의약품 복용법 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용법, 예상되는 증상, 병원 방문 시기등의 명확한 정보를 받게 되실 것이며, 낙태 유도제의 사용에 있어 단계별 과정에 대한 질문은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낙태를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약품 낙태의 의한 낙태의 위험도는 자연유산의 위험도와 거의 동일 합니다. 모든 임신의 약 15% 정도는 유산에 의해 종료됩니다. 이와 같은 유산은 보통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과다출혈이나 발열과 같은 문제가 없을 시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낙태는 유산를 유도합니다. 당신이 9주 미만의 임신상태에서 한 시간 이내에 의료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에 거주한다면, 당신은 집에서 스스로 낙태 유도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낙태유도제 복용은 위험한가요?

낙태 유도제의 복용은 임신 9주차까지 시행했을 때 합병증의 위험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 위험도는 여성들이 자연유산을 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전문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의해 어렵지 않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낙태 유도제를 복용 한 100명의 여성들 중 2-3명 정도의 여성들이 차후 의료관리를 받기 위해 의사나 응급실, 전문병원 등을 방문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출산이 안전한 국가에선 10,000 명당 1명꼴의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낙태의 경우, 이를 시행한 여성 100,000 명중 1명 미만의 사망률을 보이며, 이는 출산과 자연적 유산 보다 안전한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한 안전한 낙태는 인명구조를 의미 하기도 합니다.

낙태 유도제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낙태유도제 복용에 의한 낙태는 보통 고통이 있는 심한 복부통증, 응혈과 조직이 포함된 출혈과 메스꺼움, 구토, 설사 , 두통, 어지러움과 열감, 발열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미소프로스톨 복용후 시작되는 발열은 24시간 정도 지속되고 38 C(100.4 F) 이하의 열은 일반적 부작용입니다.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38 C이상의 열이 감지되면,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가려움증, 피부의 작은 혹(부종) 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극심하다면 합병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복부통증의 부작용을 경험 하고 있다면, 이 질문사항을 참조하세요, 이곳을 클릭! "합병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합병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낙태유도제에 의한 낙태를 임신 9주 안에 실행 한다면 합병증의 위험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이 위험도는 여성들이 자연유산을 했을 때와 동일 합니다. 임신 관련 전문의는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낙태방법을 시행한 100명의 여성중 약 2-3명의 여성만이 차후 의료적 치료를 받기위해 전문의나 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게 될것입니다.

아래의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그 증상과 치료:

과다출혈(낙태유도제에 의한 낙태에서 1% 미만 발생)

- 증상: 2시간이상 지속되는 출혈과 시간당 2개 이상의 대형 생리대를 적시는 출혈.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은 많은 혈액의 손실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치료: 진공 흡입술(소파술), 혈액 수혈이 필요해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0.2% 미만).

갑 제3호증

완전하지 않은 낙태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redacted],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아니오, 어렵지 않습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용법과 용량에 맞춰 스스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복용법은 다른 의약품 복용법 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용법, 예상되는 증상, 병원 방문 시기등의 명확한 정보를 받게 되실 것이며, 낙태 유도제의 사용에 있어 단계별 과정에 대한 질문은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낙태를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약품 낙태의 의한 낙태의 위험도는 자연유산의 위험도와 거의 동일 합니다. 모든 임신의 약 15% 정도는 유산에 의해 종료됩니다. 이와 같은 유산은 보통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과다출혈이나 발열과 같은 문제가 없을 시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낙태는 유산를 유도합니다. 당신이 9주 미만의 임신상태에서 한 시간 이내에 의료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에 거주한다면, 당신은 집에서 스스로 낙태 유도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낙태유도제 복용은 위험한가요?

낙태 유도제의 복용은 임신 9주자까지 시행했을 때 합병증의 위험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 위험도는 여성들이 자연유산을 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전문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의해 어렵지 않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낙태 유도제를 복용 한 100명의 여성들 중 2-3명 정도의 여성들이 차후 의료관리를 받기 위해 의사나 응급실, 전문병원 등을 방문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출산이 안전한 국가에선 10,000 명당 1명꼴의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낙태의 경우, 이를 시행한 여성 100,000 명중 1명 미만의 사망률을 보이며, 이는 출산과 자연적 유산 보다 안전한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한 안전한 낙태는 인명구조를 의미 하기도 합니다.

낙태 유도제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낙태유도제 복용에 의한 낙태는 보통 고통이 있는 심한 복부통증, 응혈과 조직이 포함된 출혈과 메스꺼움, 구토, 설사 , 두통, 어지러움과 열감, 발열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미소프로스톨 복용후 시작되는 발열은 24시간 정도 지속되고 38 C(100.4 F) 이하의 열은 일반적 부작용입니다.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38 C이상의 열이 감지되면,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가려움증, 피부의 작은 혹(부종) 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극심하다면 합병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복부통증의 부작용을 경험 하고 있다면, 이 질문사항을 참조하세요, 이곳을 클릭! "합병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합병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낙태유도제에 의한 낙태를 임신 9주 안에 실행 한다면 합병증의 위험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이 위험도는 여성들이 자연유산을 했을 때와 동일 합니다. 임신 관련 전문의는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낙태방법을 시행한 100명의 여성중 약 2-3명의 여성만이 차후 의료적 치료를 받기위해 전문의나 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게 될것입니다.

아래의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그 증상과 치료:

과다출혈(낙태유도제에 의한 낙태에서 1% 미만 발생)

- 증상: 2시간이상 지속되는 출혈과 시간당 2개 이상의 대형 생리대를 적시는 출혈.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은 많은 혈액의 손실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치료: 진공 흡입술(소파술), 혈액 수혈이 필요해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0.2% 미만).

완전하지 않은 낙태

- 증상: 과다출혈, 끝임없는 지속적 출혈과 고통,통증.
- 치료: 진공 흡입술(소파술).

감염

- 증상: 만약 고열(38C이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9 C이상이 되면 치료가 필요한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 치료: 항생제와 진공 흡입술(소파술)

미래의 원하지 않는 임신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피임을 하지 않고 성 관계를 하는 약 85%의 여성들이 1년 내에 임신을 합니다. 수유 중인 여성도 출산 후 약 10일 후 부터 임신 할 수 있고, 생리기간 동안에도 임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사정을 하기 바로 전에 페니스를 즉시 빼는것과 같은 일시적인 방법은, 임신이나 전염성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피임의 다양한 방법과 종류를 읽고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갑 제3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B,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WOMEN ON WEB KR

단체 소개

Women on Web KR 은 매일 전세계 여성들로부터 다국어로 수천통의 문의 및 도움 요청 이메일에 답하는 국제 단체 Women on Web 산하의 단체입니다. 다국어 헬프데스크는 의사가 감독합니다.

열람용

갑 제3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B,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비디오

낙태 유도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12주 이하의 임신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약품을 복용하십시오:

- 미페프리스톤 1정을 삼켜 복용하십시오.
- 24시간 후 미소프로스톨 4정을 혀 아래에 놓고 의약품이 용해될 때까지 30분간 유지합니다. 침은 삼켜도 됩니다. 30분 후 남은 잔여물은 삼켜도 됩니다.
- 만약여분의미소프로스톨을받으신여성의경우에, 예상했던것보다출혈이적고, 낙태가유발되는것에어떠한의구심이생긴다면, 3 시간후두번째복용량Misoprostol 2 정을혀아래에놓고30 분간정제가용해되도록합니다. 이때혀아래에남겨진잔여물은뱉으셔도무방합니다. 그러나만약출혈이시작되지않고당신에게여분의misoprostol이 남아있다면 3시간마다2정의misoprostol을최대한종5회를더복용할수도 있습니다.

출력제한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ㅂ,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비디오

낙태 유도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12주 이하의 임신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약품을 복용하십시오:

- 미페프리스톤 1정을 삼켜 복용하십시오.
- 24시간 후 미소프로스톨 4정을 혀 아래에 놓고 의약품이 용해될 때까지 30분간 유지합니다. 침은 삼켜도 됩니다. 30분 후 남은 잔여물은 삼켜도 됩니다.
- 만약여분의미소프로스톨을받으신여성의경우에, 예상했던것보다출혈이적고, 낙태가유발되는것에어떠한의구심이생긴다면, 3 시간후두번째복용량Misoprostol 2 정을혀아래에놓고30 분간정제가녹을때까지둡니다. 이때혀아래에남겨진잔여물은뱉으셔도무방합니다. 그러나만약출혈이시작되지않고당신에게여분의misoprostol이남아있다면그후3시간마다2정의misoprostol을최대한총5회를더복용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혀아래놓고미소프로스톨을용해시켜복용하기를강력히조언합니다. 이방법은당신이병원을방문하게될때를대비하여의약품의흔적이남지않는방법입니다. 미소프로스톨의복용을확인하기위한혈액검사등은존재하지않으며, 낙태를시도했다는증거를입증할방법은없습니다.

갑 제3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illegible],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약물적 임신중지에 관한 모든 것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해 더 알아보기

상담

Women on Web KR 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여성들을 지원합니다. 임신(9주 미만)의 건강한 여성이라면 온라인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단 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 등기로 발송될 것입니다. 정보를 잘 숙지하고 (드물지만) 합병증에 대비하여 응급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안전하게 자택에서 의약품을 이용한 임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질문과 답변의 개요

낙태가 필요한 당신, 저널리스트 혹은 이곳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변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한 대답과, 과학 논문을 참조한 심도 있는 대답이 될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최근 과학적 리서치에 의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낙태는 무엇입니까? 의약품 낙태란 임신 초기부터 임신 10주까지...

READ MORE

비디오

낙태 유도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12주 이하의 임신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약품을 복용하십시오: 미페프리스톤 1정을 삼켜 복용하십시오. 24시간 후 미소프로스톨 4정을 혀 아래에 놓고 의약품이 용해될 때까지 30분간 유지합니다. 침은 삼켜도 됩니다. 30분 후 남은 잔여물은 삼켜도 됩니다. 만약여분의미소프로스톨을받으신여성의경우에, 예상했던것보다출혈이적고, 낙태가유발되는것에어떠한의구심이생긴다면, 3 시간후두번째복용량 Misoprostol 2 정을혀아래에놓고30 분간정제가 녹을때까지둡니다. 이때혀아래에남겨진잔여물은뱉으셔도무방합니다. 그러나만약출혈이시작되지않고당신에게여분의misoprostol이남아있다면그후3시간마다2정의misoprostol을최대한총5회를더복용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혀아래놓고미소프로스톨을용해시켜복용하기를강력히조언합니다. 이방법은당신이병원을방문하게될때를대비하여의약품의흔적이남지않는방법입니다. 미소프로스톨의복용을확인하기위한혈액검사등은존재하지않으며, 낙태를시도했다는증거를입증할방법은없습니다.

READ MORE

갑 제3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보도자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kihasa.re.kr
배포일시	2019년 2월 14일(목) 09:00
보도일시	2019년 2월 14일(목) 15:00 이후
배포부서	대외협력센터장 김성덕 ☎ 044-287-8282, ✉ dubitas@kihasa.re.kr
상세문의	인구정책연구실 이소영 연구위원 ☎ 044-287-8110
매 수	23매 (본문 3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 발표

–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8.9.~10.) –

▣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분석**됐다.

○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됐다.

○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 명**으로 이전 조사(2011년)보다 그 규모를 확대하여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이번 조사는 주제(인공임신중절)의 민감성(불법성 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진행된 일회성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 이하의 조사결과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 신 뢰 도: 표본오차 ±1.0%, 95% 신뢰수준 (2011년 조사: ±1.55%)

▣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성경험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되었다.

○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추세이다.

*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

** ('05) 29.8‰ (342,433건) → ('10) 15.8‰ (168,738건) → **('17년) 4.8**‰ (49,764건)

– **인공임신중절 감소의 원인**으로는 ①피임실천율 증가, ②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③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피임비실천율: ('11) 19.7% → ('18) 7.3%

* 성경험여성의 피임방법(중복응답): 콘돔 사용 37.5%('11) → 74.2%('18) (36.7%p 증가); (사전) 경구피임약 복용 7.4%('11) → 18.9%('18) (11.5%p 증가)

청소년 성경험자 피임실천율: ('14) 43.6% → ('16) 51.9% (8.3%p 증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②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12) 1,384백건 → ('17) 1,783백건 (28.8%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 만 15~44세 여성 수: ('10) 11,231,003명 → ('17) 10,279,045명 (8.5% 감소)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1순위)**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나타났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이며,

○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0,000명)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불법으로 인해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다.

○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붙임 1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 결과 세부 내용

1. 조사의 개요

○ 수탁기간 : 2018. 3. 28. ~ 2018. 11. 23.

○ 조사대상 : 만 15 ~ 44세 여성 1만 명 대상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목적 :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및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주기관 : 보건복지부

< 이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비교 >

구 분	'05년 실태조사	'11년 실태조사	'18년 실태조사
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상 / 방법	15~44세 여성 4,000명 전화조사	15~44세 여성 4,000명 온라인조사	15~44세 여성 10,000명 온라인 조사
표본오차	1차 조사 ±2.53%p 2차 조사 ±3.10%p	±1.55%p	±1.0%p

2. 주요 조사결과

※ 이번 조사는 주제(인공임신중절)의 민감성(불법성 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진행된 일회성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 이하의 조사결과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조사시점까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 10,000명 중 총 756명으로 나타남

○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7.6%, 성경험 여성(7,320명)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0.3%, 임신경험 여성(3,792명)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9%로 나타남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조사 대상 대비	성경험 여성 대비	임신경험 여성 대비
7.6	10.3	19.9

* 조사대상 10,000명, 성경험 여성 7,320명, 임신경험 여성 3,792명

○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1~7회이며 평균 횟수는 1.43회(±0.74)로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경험

*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는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임

○ **(당시 연령)**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756명)의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임

○ **(당시 혼인상태)**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

○ **(당시 피임 실천)**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당시 콘돔, 자궁 내 장치 등의 피임 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12.7%,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과 같은 불완전한 피임 방법 사용은 47.1%, 피임하지 않은 비율[응급피임약(사후) 복용 포함]은 40.2% 수준

– **(당시 피임 비실천 이유, 복수응답)** 피임하지 않은 여성[응급피임약(사후) 복용 포함]의 피임 비실천 이유는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 18.9%,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16.7%,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당시 임신 사실 관련 파트너와의 공유)** 임신 사실을 파트너에게 말한 비율은 95.0%이고, 임신사실을 말했을 때 파트너의 반응은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43.0%, “아이를 낳자고 했다” 34.0%, “인공임신중절을 하자고 했다” 20.2% 등으로 나타남

– 파트너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자고 한 비율은 응답자 여성의 당시 혼인 상태가 미혼일 때 가장 높았고(26.2%), 이어 사실혼·동거 19.8%, 법률혼·별거·이혼·사별은 13.5% 수준임. 법률혼·별거·이혼·사별 집단은 “아이를 낳자고 했다”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라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음

○ **(인공임신중절 방법)** 전체 임신중절경험자(756명) 중 수술만 받은 여성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약)이나 유사약 사용자로 지인 · 구매대행(22.6%), 온라인(15.3%)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위궤양에 사용되는 약물(싸이토텍 등 자궁수축유발) 등을 의사처방(62.1%)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 **(인공임신중절 시기)** 평균 6.4주로 나타났고, 누적비율로 보면 임신주수가 4주 이하 31.5%, 8주 이하 84.0%, 12주 이하 95.3% 수준

○ **(인공임신중절 지역)**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역은 주거지 근처가 64.7%, 주거지와 가까운 타 시·도 25.1%, 주거지와 먼 타 시·도 9.9%, 해외 0.3% 수준

–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 수는 평균 1.51회(±0.85)로 나타났음

○ **(인공임신중절 비용)** 30-50만 원 미만 41.7%, 50-100만 원 미만 32.1%, 30만 원 미만 9.9% 순으로 응답함

○ **(인공임신중절 당시 필요 정보)** 인공임신중절 당시 필요했던 정보(복수응답, 2가지)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71.9%가 이에 응답함. 인공임신중절 비용,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부작용 및 후유증도 각각 57.9%, 40.2%로 나타남

* 관련 비율은 우선순위 2가지에 대해 복수응답 처리한 결과임

– **(당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에 대한 주된 습득 경로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이 3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대상"이 29.3%, "친구 및 지인(선후배, 직장동료 등)" 18.3% 순으로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이유)**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 2가지(복수응답) 중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 그 외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2.9%, 31.2%로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사후관리)** 인공임신중절 이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 중 47.7%임

– 인공임신중절 이후 8.5%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고, 54.6%가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14.8%만이 치료를 받음

* 신체적 증상: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유산, 불임 등, ** 정신적 증상: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충동 등

○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있었지만 치료받지 않은 이유)** “치료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46.3%),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2.8%), “치료받으러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12.8%) 순으로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고려율과 고려 경험(인공임신중절 경험 없음)**

○ 임신경험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비율은 임신경험 여성(3,792명) 중 10.1%(383명)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의 약 20%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10%가 임신중절을 고려하였음

○ **(인공임신중절 고려 이유)**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게 된 주된 이유 2가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각각 44.0%, 42.0%로 높게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이유)** 최종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2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가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경제상황이 좋아져서, 파트너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등)’가 39.8%,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부작용, 향후 임신에 부정적 영향)' 24.2%, '인공임신중절 자체가 무서워서' 18.9%, '사산·유산이 되어서' 13.3%로 순이었음

□ 만 15~44세 여성의 평소 피임 실천 및 행태

* 평소 피임실천은 현재 파트너 또는 가장 최근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응답임

○ **(평소 피임실천)** 피임을 항상 하거나 대부분 하는 경우는 여성 본인이 63.3%, 파트너가 68.4%였으며, 19세 이하와 20대에서는 여성 본인(각각 83.8%, 79.4%)이 파트너(각각 80.9%, 77.6%)보다 높았음

– **(피임 지식 및 정보의 주된 습득 경로, 복수응답)** 인터넷 등 언론매체(72.5%)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어 학교(교육) 32.8%, 지인(친구, 선후배 등) 29.7%, 의료기관(병의원, 산부인과 등) 26.0% 순으로 나타남

○ **(평소 피임 실천 방법, 복수응답)** 콘돔 사용이 74.2%로 가장 높았고 불완전한 방법(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도 65.7%로 나타남

– **(피임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 복수응답)** 19세 이하와 미혼은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가 가장 높았고(각각 48.2%, 41.6%)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도 높은 수준이었음(각각 33.1%, 29.9%)

* 본인과 파트너 모두 피임을 항상 하는 경우를 제외한 응답임

□ 지원정책에 관한 견해

○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 정책 욕구가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로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가장 많이 응답함

○ **(상담)**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은 97.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의료상담 이외에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7%의 응답자가, 그리고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 9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다소 필요함 + 매우 필요함 응답 기준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 형법에 관한 견해

○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임*

* '개정 필요'(75.4%), '잘 모름'(20.8%), '개정 불필요'(3.8%)

–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66.2%)',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6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모자보건법에 관한 견해

○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0,000명)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함

–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사유별 허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유[모체의 생명 위협,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 태아 이상 또는 기형, 강간 또는 근친상간,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이별, 별거, 이혼 등), 미성년자, 본인 요청]에 대해서는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45.8~91.2%)

–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과 경제적 이유(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임신주수를 고려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1%,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본인의 요청, 경제적 이유(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제상태)에 한하여 '허용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4.1%, 7.4%, 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모든 허용사유에 대해서는 '허용불가'의견이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 조사 시점에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만 15~44세) 7,320명의 총 임신 경험은 7,484회이며, 이 중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총 1,084건으로 나타남

– 출산 5,418건, 사산 71건, 자연유산 1,089건

○ 2017년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천 명당 4.8건

*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 = 48/10,000 * 1000 = 4.8

○ 2017년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는 약 50,000건 (49,764~50,703건)*

* (전체 인공임신중절률을 활용한 추정) 48.413/10000 * (15~44세 여성 모집단 수(2017년 연앙인구)) = 49,764 건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을 활용한 추정): $\sum_{n=15}^{44}$(인공임신중절률(n)*n세2017년연앙인구) = 50,066 건

(5세 단위 연령 집단별 인공임신중절률을 활용한 추정): $\sum_{n=1}^{8}$(인공임신중절률(n집단)*집단별2017년연앙인구) = 50,703 건

○ **(추이)** 다음 그림과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

<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 (단위: 건, 천 명당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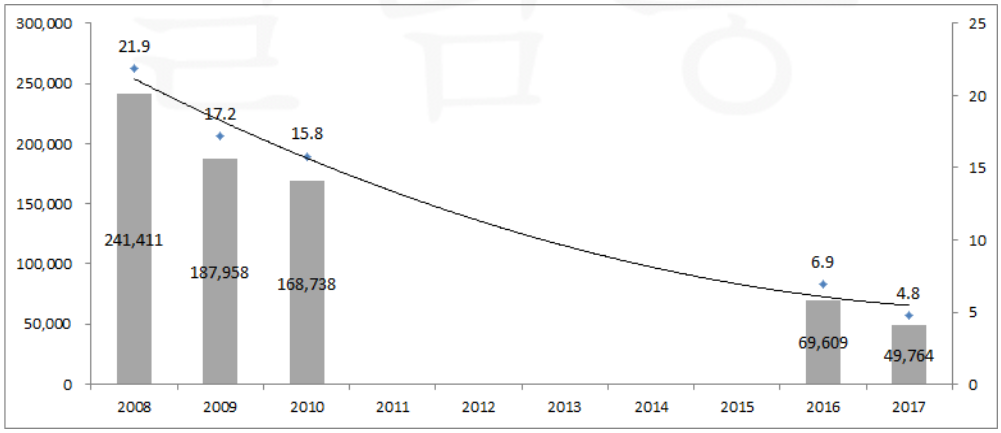

○ **(인공임신중절률 감소의 원인)** ①피임실천율 증가, ②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③ 만 15~44세 여성 수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① 피임비실천율: ('11) 19.7% → ('18) 7.3%

* 성경험여성의 피임방법(중복응답): 콘돔 사용 37.5%('11) → 74.2%('18) (36.7%p 증가);
(사전) 경구피임약 복용 7.4%('11) → 18.9%('18) (11.5%p 증가)

청소년 성경험자 피임실천율: ('14) 43.6% → ('16) 51.9% (8.3%p 증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피임도구사용량(GS25 편의점 콘돔 판매량 기준) : ('13) 100 → ('15) 141 (41%p 증가) (GS 리테일)

②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12) 1,384백건 → ('17) 1,783백건 (28.8%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 만 15~44세 여성 수: ('10) 11,231,003명 → ('17) 10,279,045명 (8.5% 감소) (주민등록인구통계)

3.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 이번 조사는 2011년 실태조사 이후 7년 만에 실시된 조사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조사결과, 피임 지식 및 정보 습득, 피임 실천, 인공임신중절 경험 과정 등에서 취약성과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만 15~44세 여성의 피임 지식 및 정보의 습득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평소 피임 실천 행태에 있어서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과 같은 방법으로 피임을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이후 8.5%가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으나 43.8%만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적 증상이 있었던 54.6% 중 14.8%만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조사 결과 도출된 여성의 정책 욕구를 반영하여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가 필요함

-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가장 많이 응답함
-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96% 이상이 의료적 상담, 심리·정서적 상담,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 지원 상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음
-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에서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상담을 제시함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 국가차원에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과 경험하지 않았지만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여성 모두 인공임신중절 결정(내지는 고려) 사유의 상당부분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임신·출산을 법률적 혼인제도 안에서만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더 나아가 산부인과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의 성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조기의 산부인과 이용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19세 이하와 미혼의 산부인과 접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조기의 산부인과 이용 증대를 통해 이들의 성건강 확보와 함께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

열람용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붙임 2	주요 결과 통계표

1 조사 개요

구 분	조사 기간	조사 규모	비고
사전 조사	2018.8.23.~2018.8.28.	만 15~44세 여성 총 1,000명 (A형, B형 각 500명)	-A형(관련법 문항 임신 경험 문항 뒤에 배치) -B형(관련법 문항 임신 경험 문항 앞에 배치)
본 조사	2018.9.20.~2018.10.30.	만 15~44세 여성 총 10,000명	

2 조사 체계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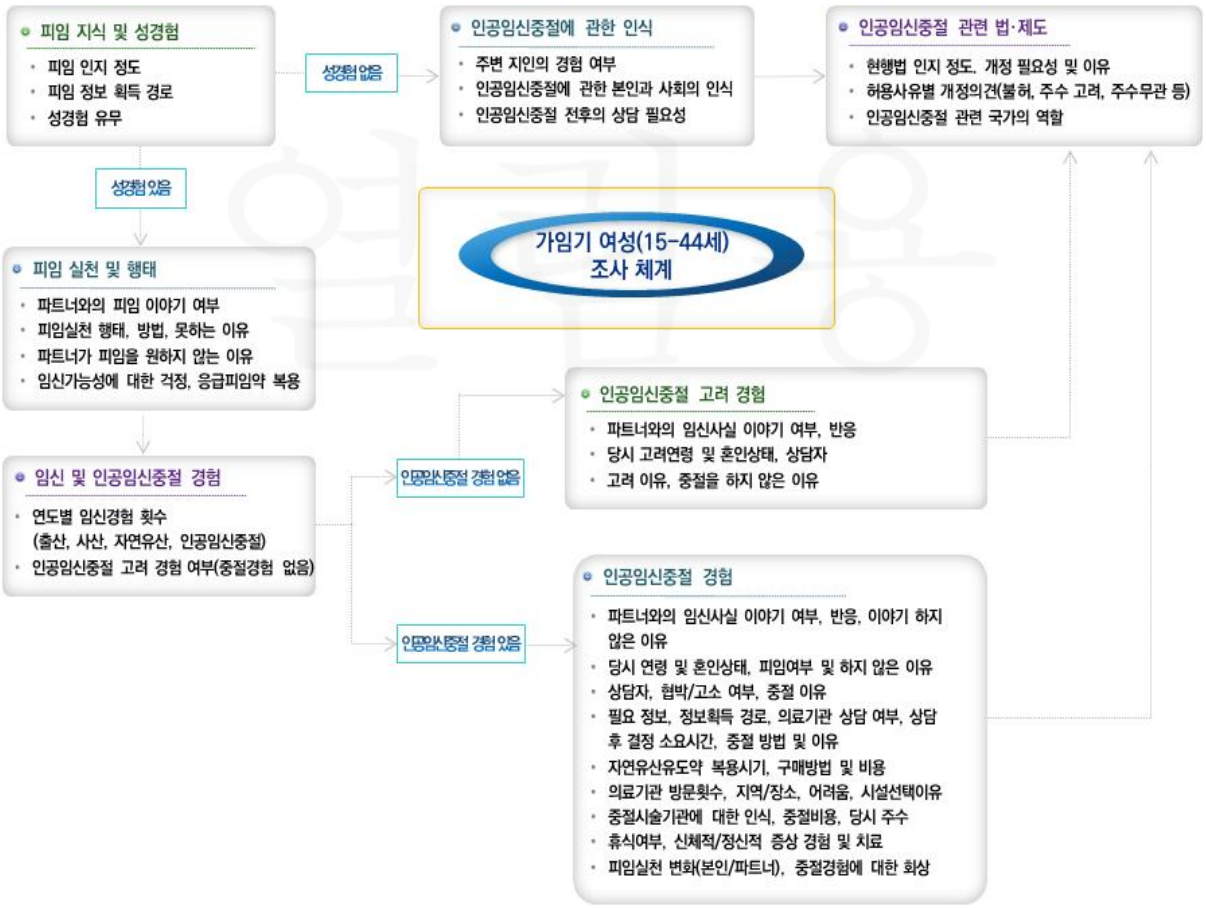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3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 분	비율	응답자 수
전체	100.0	(10,000)
지역		
대도시	47.1	(4,711)
중소도시	42.0	(4,203)
농어촌	10.9	(1,086)
현재 연령		
15~19세	14.8	(1,479)
20~24세	15.4	(1,544)
25~29세	14.1	(1,415)
30~34세	17.2	(1,719)
35~39세	18.1	(1,815)
40~44세	20.3	(2,02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	(147)
고졸 이하	16.9	(1,686)
대졸 이하	68.5	(6,848)
대학원 이상	13.2	(1,319)
현재 혼인상태		
미혼	52.9	(5,289)
법률혼	37.8	(3,781)
사실혼·동거	7.5	(749)
별거·이혼·사별	1.8	(181)
취업여부		
취업	55.3	(5,526)
비취업	44.7	(4,47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5	(350)
100~200만원 미만	17.6	(1,762)
200~300만원 미만	10.2	(1,016)
300~400만원 미만	20.5	(2,052)
400~500만원 미만	10.4	(1,042)
500~600만원 미만	17.3	(1,734)
600~700만원 미만	9.1	(908)
700만원 이상	9.0	(895)
잘 모름	2.4	(241)

주: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임신경험 및 임신 결과

(단위: 건수)

구 분	임신 경험	임신 결과			
		출산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 중절(낙태)
전체	7,484	5,418	71	1,089	1,084
2018년	445	234	3	105	28
2017년	450	289	9	108	48
2016년	497	329	3	112	69
2015년 이전(2015년 포함)	6,092	4,567	56	765	939

주: 해당 수치는 승수적용 후 반올림한 수치(건수)로 각 연도의 임신경험과 해당 연도의 임신결과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열람용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5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의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단위: %, 명)

구 분	내용	(명)
전체	100.0	(756)
당시 연령		
19세 이하	1.7	(13)
20~24세	27.8	(210)
25~29세	30.0	(227)
30~34세	22.8	(172)
35~39세	14.6	(110)
40~44세	3.1	(23)
당시 혼인상태		
미혼	46.9	(355)
법률혼	37.9	(286)
사실혼·동거	13.0	(98)
별거·이혼·사별	2.2	(17)

주: 1) 복수의 인공임신중절 경험 시 가장 최근의 경험 시점 기준임.

2)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열람용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⑥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 (복수응답, 2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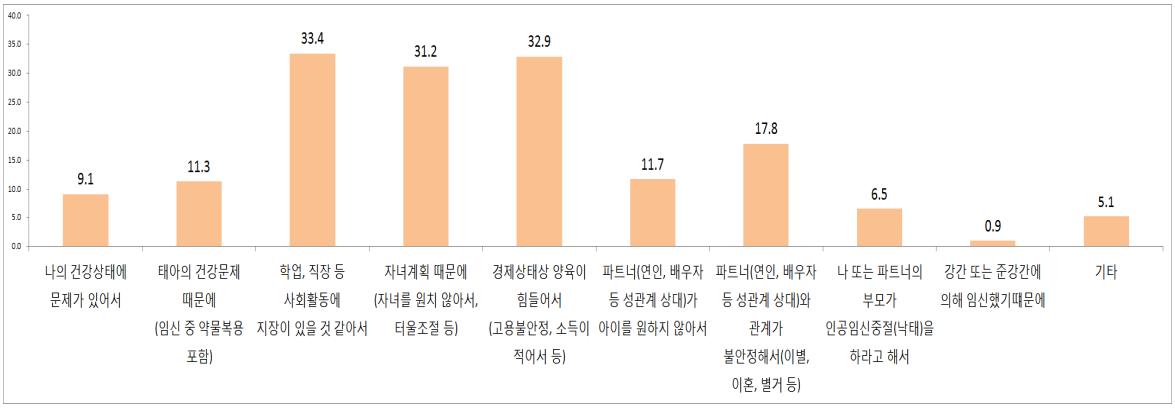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명)
전체	9.1	11.3	33.4	31.2	32.9	11.7	17.8	6.5	0.9	5.1	(756)
지역											
대도시	9.1	9.8	34.5	29.6	34.4	11.6	20.2	5.7	0.7	6.3	(317)
중소도시	9.4	12.0	32.6	32.4	30.8	11.7	16.4	6.3	1.0	4.6	(335)
농어촌	8.1	13.5	32.4	32.4	35.2	12.1	14.7	9.6	1.0	3.6	(104)
당시 연령											
19세 이하	0.0	0.0	55.9	0.0	22.6	22.2	37.5	22.2	8.2	7.3	(13)
20~24세	5.7	6.2	52.7	12.6	37.6	11.1	26.8	9.6	1.6	3.5	(210)
25~29세	4.5	11.2	33.9	28.3	35.3	11.0	20.2	7.1	0.5	6.1	(227)
30~34세	12.5	19.3	19.5	45.6	24.8	12.2	11.6	4.2	0.0	5.6	(172)
35~39세	18.0	7.2	16.4	55.4	37.2	12.1	5.6	2.6	0.9	4.7	(110)
40~44세	22.5	23.2	26.1	23.2	13.5	14.0	4.8	0.0	0.0	9.2	(23)
교육수준											
고졸 이하	8.1	9.2	24.0	29.3	40.8	13.5	22.5	5.3	0.6	4.1	(151)
대졸 이하	9.0	12.4	34.6	31.2	31.5	11.7	16.2	7.2	1.1	5.3	(505)
대학원 이상	11.3	8.7	41.5	34.4	27.9	9.4	18.5	4.8	0.0	6.1	(99)
당시 혼인상태											
미혼	4.6	6.2	49.9	12.5	31.5	12.5	29.5	9.1	1.8	5.4	(355)
법률혼	13.1	17.2	14.3	53.7	33.8	9.3	2.6	2.4	0.0	6.6	(286)
사실혼·동거	13.1	14.0	31.7	35.3	35.0	13.8	12.3	7.0	0.0	1.0	(98)
별거·이혼·사별	13.6	0.0	19.5	18.3	36.7	24.0	62.1	18.7	0.0	0.0	(17)

주: 1)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10가지 사유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②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임신 중 약물복용 포함)
③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④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⑤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⑥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⑦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⑧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⑨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기 때문에
⑩ 기타

2) 지역, 교육수준은 현재 기준임. 3) 복수의 인공임신중절 경험 시 가장 최근의 경험 시점 기준임.
4)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7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했으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여성의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단위: %, 명)

구 분	내용	(명)
전체	100.0	(383)
당시 연령		
19세 이하	2.4	(9)
20~24세	18.1	(69)
25~29세	28.8	(110)
30~34세	31.9	(122)
35~39세	15.9	(61)
40~44세	2.8	(11)
당시 혼인상태		
미혼	29.8	(114)
법률혼	56.4	(216)
사실혼·동거	11.1	(42)
별거·이혼·사별	2.7	(10)

주: 1)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했던 임신이 2회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의 고려 경험 시점 기준임.

2)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열람용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⑧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주된 이유 (복수응답, 2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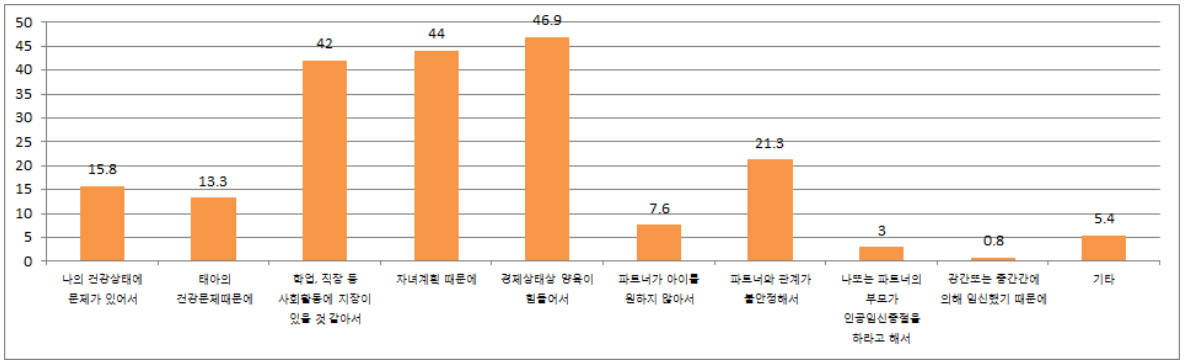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명)
전체	15.8	13.3	42.0	44.0	46.9	7.6	21.3	3.0	0.8	5.4	(383)
지역											
대도시	14.1	10.0	37.8	46.6	46.6	9.7	28.2	2.5	0.7	3.8	(144)
중소도시	17.9	12.9	46.4	40.7	46.9	5.8	18.1	3.9	1.2	6.3	(178)
농어촌	13.6	21.8	39.1	47.5	47.6	8.2	14.5	1.4	–	6.3	(62)
당시 연령											
19세 이하	–	–	57.1	44.4	43.8	–	43.9	–	10.8	–	(9)
20~29세	11.7	13.5	51.0	33.1	48.7	5.8	25.4	5.1	0.6	5.0	(180)
30~39세	19.2	13.9	34.2	53.7	44.5	10.2	16.8	1.1	0.6	5.7	(183)
40~44세	39.1	10.0	10.0	60.4	60.1	–	10.2	–	–	10.2	(11)
교육수준											
고졸 이하	19.7	19.9	30.5	45.2	54.2	3.3	19.3	3.1	1.6	3.0	(61)
대졸 이하	17.5	13.1	39.3	44.2	46.3	8.2	20.7	3.3	0.4	6.9	(254)
대학원 재학 이상	5.8	7.9	62.5	42.1	42.4	9.4	25.3	1.4	1.6	1.6	(68)
당시 혼인상태											
미혼	5.9	6.8	57.7	22.2	42.3	9.2	40.3	4.6	1.8	9.3	(114)
법률혼	22.6	18.5	32.7	57.9	47.6	6.3	7.9	1.5	0.5	4.6	(216)
사실혼·동거	7.1	4.9	55.2	39.8	52.4	4.8	28.9	6.9	–	–	(42)
별거·이혼·사별	18.4	10.5	8.9	10.5	60.6	29.4	61.8	–	–	–	(10)

주: 1)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게 된 10가지 사유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②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임신 중 약물복용 포함)
③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④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⑤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⑥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⑦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⑧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⑨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기 때문에
⑩ 기타

2) 지역, 교육수준은 현재 기준임.
3)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했던 임신이 2회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의 고려 경험 시점 기준임.
4)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⑨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된 국가의 할 일(우선순위 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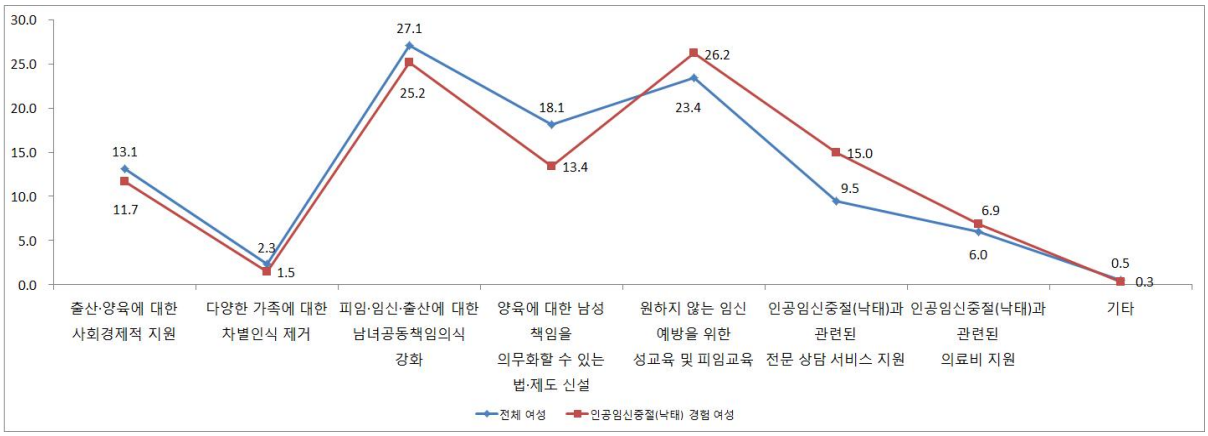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인식 제거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 신설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전문상담서비스 지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13.1	2.3	27.1	18.1	23.4	9.5	6.0	0.5	100.0	(10,000)
만 15~~44세 여성 특성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11.7	1.5	25.2	13.4	26.2	15.0	6.9	0.3	100.0	(756)
인공임신중절 고려자(미경험)	18.8	3.7	25.8	15.4	21.7	9.1	5.2	0.3	100.0	(383)
임신경험자(인공임신중절 미고려/미경험)	15.4	2.3	24.5	15.2	30.0	8.9	3.7	0.0	100.0	(2,653)
성경험은 있으나 임신미경험자	11.4	2.1	27.9	19.0	21.9	9.6	7.3	0.7	100.0	(3,528)
성경험 미경험자	12.5	2.4	29.3	21.4	18.4	8.5	6.5	1.0	100.0	(2,680)

주: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열람용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⑩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나 자신과 우리 사회의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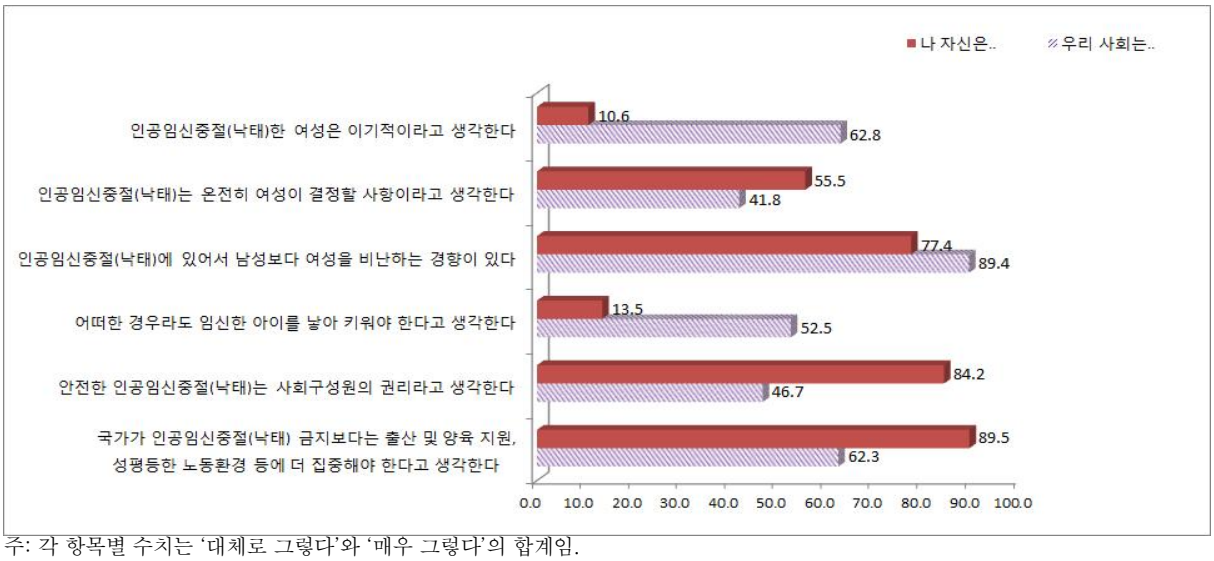

주: 각 항목별 수치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임.

문항	나 자신은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공임신중절(낙태)한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47.5%)	(41.9%)	(9.1%)	(1.6%)	(16.6%)	(20.6%)	(41.7%)	(21.1%)
(2)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온전히 여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20.8%)	(23.7%)	(32.0%)	(23.5%)	(20.7%)	(37.5%)	(29.2%)	(12.6%)
(3) 인공임신중절(낙태)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11.9%)	(10.7%)	(32.4%)	(45.0%)	(3.7%)	(6.9%)	(33.8%)	(55.6%)
(4) 어떠한 경우라도 임신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46.7%)	(39.8%)	(11.3%)	(2.1%)	(19.4%)	(28.1%)	(39.0%)	(13.4%)
(5)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3.9%)	(11.9%)	(47.3%)	(36.9%)	(15.5%)	(37.8%)	(32.8%)	(13.9%)
(6) 국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금지보다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성평등한 노동환경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9%)	(7.7%)	(28.1%)	(61.4%)	(8.3%)	(29.4%)	(33.6%)	(28.7%)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⓫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명)
전체	62.5	50.9	52.0	56.4	66.2	65.5	2.5	(7,535)
지역								
대도시	63.0	51.0	52.9	56.8	66.4	66.5	2.3	(3,549)
중소도시	62.6	51.2	52.3	56.3	66.4	64.9	2.8	(3,180)
농어촌	59.9	49.3	47.1	55.3	64.8	63.6	2.2	(806)
현재 연령								
19세 이하	61.7	58.1	57.7	59.9	71.0	61.8	2.9	(1,039)
20~29세	66.8	58.2	55.3	59.8	74.3	68.6	3.6	(2,300)
30~39세	62.8	46.4	48.7	54.2	63.2	64.7	2.0	(2,735)
40~44세	55.8	42.9	49.2	52.7	56.1	64.8	1.6	(1,462)
교육수준								
중졸 이하	52.9	52.8	59.6	48.5	69.1	40.7	5.0	(104)
고졸 이하	59.6	50.8	57.0	62.0	65.2	60.1	2.4	(1,162)
대졸 이하	63.9	51.1	51.2	56.0	66.8	67.3	2.4	(5,240)
대학원 이상	59.6	50.1	49.7	53.1	64.2	64.7	2.8	(1,029)
현재 혼인상태								
미혼	65.4	57.6	54.7	58.4	72.1	67.9	3.2	(4,036)
법률혼	60.2	42.8	48.0	53.1	59.8	63.3	1.8	(2,840)
사실혼·동거	55.2	43.7	54.7	57.6	56.2	58.9	1.7	(538)
별거·이혼·사별	54.5	50.0	45.4	64.4	65.8	66.6	1.7	(121)

주: 1)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7가지 이유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
② 여성에게 임신·출산의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기 때문에
③ 성적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④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⑤ 인공임신중절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
⑥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는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⑦ 기타

2)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3) 형법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7,535명 기준

4) 모든 변수가 현재 상태(조사시점) 기준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⑫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개정에 대한 인식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N=4,888)

(단위: %, 명)

허용 사유	허용 불가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허용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허용	잘 모르겠음
모체의 생명위협	1.2	26.5	69.9	2.4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	0.7	31.9	65.5	1.9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	1.0	34.9	60.7	3.4
태아 이상 또는 기형	1.8	19.8	74.0	4.4
강간 또는 근친상간	2.0	5.4	91.2	1.3
자녀계획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14.1	50.1	28.3	7.4
경제적 이유 (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제상태)	5.6	45.0	42.1	7.3
파트너 관계 불안 (이별, 별거, 이혼 등)	4.4	37.2	51.4	7.0
미성년자	3.1	21.5	71.3	4.1
본인의 요청	7.4	38.7	45.8	8.0

주: 1)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4,888명 기준.
2)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열람용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붙임 3 OECD회원국 임신중절 허용사유 등 현황

(단위: 1,000명당 건수)

국가명	모체 생명 보호	모체의 신체적 건강	모체의 정신적 건강	강간 또는 근친상간	태아의 장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인공임신 중절(낙태)률 (15-44세)
1. 캐나다	○	○	○	○	○	○	○	12.1('12)
2. 미국	○	○	○	○	○	○	○	11.8('15)
3. 영국	○	○	○	×	○	○	×	13.0*('15)
4. 덴마크	○	○	○	○	○	○	○	15.5('10)
5. 아이슬란드	○	○	○	○	○	○	×	12.0*('13)
6. 노르웨이	○	○	○	○	○	○	○	12.0*('15)
7. 터키	○	○	○	○	○	○	○	3.9('11)
8. 스페인	○	○	○	○	○	○	○	9.0*('14)
9. 포르투갈	○	○	○	○	○	○	○	9.0('12)
10. 프랑스	○	○	○	○	○	○	○	15.0*('15)
11. 아일랜드	○	×	×	×	×	×	×	-
12. 벨기에	○	○	○	○	○	○	○	9.3('11)
13. 독일	○	○	○	○	○	○	○	7.2('12)
14. 그리스	○	○	○	○	○	○	○	7.3('08)
15. 스웨덴	○	○	○	○	○	○	○	18.0*('15)
16. 스위스	○	○	○	○	○	○	○	5.0*('14)
17. 오스트리아	○	○	○	○	○	○	○	1.4('00)
18. 네덜란드	○	○	○	○	○	○	○	8.0*('14)
19. 룩셈부르크	○	○	○	○	○	○	×	-
20. 이탈리아	○	○	○	○	○	○	○	9.4*('12)
21. 일본	○	○	×	○	×	○	×	10.4('08)
22. 핀란드	○	○	○	○	○	○	×	8.0*('15)
23. 오스트레일리아	○	○	○	○	○	○	○	10.6('13)
24. 뉴질랜드	○	○	○	○	○	×	×	12.0*('15)
25. 멕시코	○	○	○	○	○	○	○	0.7('12)
26. 체코	○	○	○	○	○	○	○	10.5('12)
27. 헝가리	○	○	○	○	○	○	○	14.0*('14)
28. 폴란드	○	○	○	○	○	×	×	0.1('12)
29. 한국	○	○	○	○	○	×	×	15.8('10)
30. 슬로바키아	○	○	○	○	○	○	○	8.0*('14)
31. 칠레	×	×	×	×	×	×	×	0.5('05)
32. 슬로베니아	○	○	○	○	○	○	○	10.4('12)
33. 이스라엘	○	○	○	○	○	×	×	12.5('12)
34. 에스토니아	○	○	○	○	○	○	○	17.0*('15)
35. 라트비아	○	○	○	○	○	○	○	15.0('12)
36. 리투아니아	○	○	○	○	○	○	○	9.2('12)

주: 1) OECD 회원국은 2018년 리투아니아 가입으로 현재 36개국임.

2) 아일랜드의 경우, 2018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 규정 폐지가 결정된 상태로 임신 12주 이내 수술은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엔 특정 사유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음. 국제적으로 보고되는 인공임신중절률은 산출되고 있지 않으나, 보조 수치로서 영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보고되고 있음(3.2('16): U.K., Department of Health. (2017). Abortion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2016. Overview of Irish Abortion (www.secondlookproject.ie/main/wp-content/uploads/2017/ 12/2017-stats.pdf)

3) 인공임신중절률은 만 15~44세 여성 천명 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의미하며, *는 만 15~49세 인공임신중절률을 뜻함.

자료: 1)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 World Population Policies - 2015 Database: Fertility,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olicies Database. [Website]. (2018. 7. 9.). Retrieved from http://esa.un.org/poppolicy/about_database.aspx.

2) 아일랜드 관련: BBC 뉴스. [웹사이트]. (2018. 5. 29.) URL: https://www.bbc.com/korean/news-44269487

3) 인공임신중절률

① United Nations. (2014). Abortion Policies and Reproductive Health around the World. United Nation publication, Sales No. E.14.XIII.11. 40-46.

② Singh, S., Remez, L. Sedgh, G., Kwok, L., & Onda, T. (2018). Abortion Worldwide 2017: Uneven Progress and Unequal Access. New York: Guttmacher Institute

③ 한국: 손명세, 강명신, 장석일, 김해중, 박길준, 남정모, ... 김은미.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④ 뉴질랜드: NewZealand Government.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stats.govt.nz/information-releases/abortion-statistics-year-ended-december-2017

⑤ 미국: Jatlaoui TC, Boutot ME, Mandel MG, et al. (2018). Abortion Surveillance — United States, 2015. MMWR Surveill Summ, 67(No. SS-13):1-45.

갑 제4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THE FACT

잠자는 '낙태법' 국회 뒷짐에 여성·의료계 피해

조속한 대체 입법 목소리 커...형법·모건법 표류

입력: 2021.06.27 00:00 / 수정: 2021.06.27 00:00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

조속한 대체 입법 목소리 커...형법·모건법 표류

[더팩트 | 신진환 기자] 국회가 낙태죄 개정에 손을 놓으면서 의료계 혼란과 여성의 건강권·재생산권·자기결정권이 침해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위헌으로 판단했다. 또한 임신 초기 3개월 이내 배아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시한 내 대체입법은 이뤄지지 않았고, 낙태죄 처벌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때문에 올해부터 낙태죄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지난 2월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갑 제5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현재 정부안 외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된 상태다.

일부 법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주목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 10주 이내 임신중지를 전면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임신의 지속이 태아와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임신 20주의 범위 내에서 낙태 시술을 인정하자 내용이 골자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한 방안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많은 국민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여성운동가 출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낙태 처벌 및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수술과 약물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낙태죄가 있을 때도 이미 임신중절은 사문화된 상태였고 음지에서 많이 이뤄졌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하나의 의료서비스로 제공돼야 하는 측면에서 형법상 처벌 조항을 남길 이유가 없고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 입법 부재로 의료계 혼란과 여성의 건강권·재생산권·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남윤호 기자

갑 제5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여성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낙태죄 폐지 후속 법안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진전은 없다. 낙태죄 형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표류하고 있으며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측에 따르면 조만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오른 형법 개정안을 다룰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입법 공백은 장기화 흐름을 보인다. 헌재의 결정 이후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여야는 약속을 어긴 셈이다. 대체 입법 부재로 의료계 혼란과 여성의 건강권·재생산권·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가 미적대는 배경에는 생명 윤리라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 반대 측에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면, 낙태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계와 의료계 등 각계에서는 조속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 기준과 지침 등을 법률로 정해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임신 초기 약물을 이용한 낙태 근절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회와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사무총장 연취현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회가 일부러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사회적 지도층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세부적인 개정 방향 등)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야 하는데 이걸 피하고 있다. 국민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hincombi@tf.co.kr

Copyrightⓒtf.co.kr

갑 제5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사회 >

낙태 입법공백 2년 9개월… 임신중지 여성, 불법 낙태약·병원 찾아다녀

2021년 1월 1일 낙태죄 효력 상실했지만 입법공백 지속
임신중지는 여전히 음지에서… 불법 낙태약 유통 판쳐

최효정 기자

입력 2022.02.11 15:57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2년 9개월이 흘렀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태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의 약물 도입 정책도 미뤄지면서 임신중지 기로에 놓인 여성들은 여전히 불법유통 낙태약을 구입하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낙태죄 폐지 시위./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제공

갑 제6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낙태죄 관련 6개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체 입법 시한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난 2019년 4월 11일 이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로, 이 마저도 1년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대체 입법 시한을 넘기는 시점에 약물 도입을 위해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현대약품이 식약처에 먹는 임신중절약인 '미프지미소' 품목 허가를 신청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과 종교계 등의 반발로 현재까지 허가가 나오지 못했다

임신중지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이뤄진다. 자격의 유무, 약의 성분 등은 인증조차 할 수 없고 낙태약의 불법 온라인 판매가 버젓이 이뤄진다. 하지만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감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런 불법 낙태약을 구하거나, 낙태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몰래 찾아다녀야 한다. 입법 공백과 정책 부재로 인해 여성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다.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사라졌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 22주 이후부터 낙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 시술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여성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임신중단 수술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5년 내 임신 중단 경험자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술 비용은 평균 60~80만원 사이로 추정되나, 임신 중단 연도가 최근일수록 더 가격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80만~100만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2016~2017년 경험자(15.6%)보다 2021년 경험자(40.0%)가 많았다. 임신중단 과정에서 지출한 의료비용(수술·약물 포함)이 부담된다는 답변도 77.9%에 달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답변은 임신중단 시기가 2020~2021년인 응답자들에게서 41.4%에 달했다.

임신중절에 대한 정보도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평균 5.65주, 임신중단 시기는 평균 7.08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단 수술을 시행하는데 인지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상 소요된 이유는 임신중단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가 부족해서(34.7%),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서(31.7%), 의료기관에서 임신중단을 할 수 없다고 해서(18.3%), 임신중단 비용이 없거나 부족해서(17.8%), 주변 시선이 부담되서(12.4%) 순으로 높았다.

갑 제6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단 수술비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면서 지역, 대상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청소년 등 젊은층과 저소득층에서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의료접근 제고를 위해 약물을 포함한 모든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해 보편적 공공의료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열람용

갑 제6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사회 사회일반

임신중단약 구하려 '네덜란드 피난처'까지 찾아야 하는 여성들

등록 :2018-06-11 09:58 수정 :2018-06-11 21:08

비영리 여성단체 '위민 온 웹'
10주 미만 낙태금지국가 여성 대상
의료진 문진 거쳐 약 적절량 제공
한국 여성도 3년간 1500여명 도움
'위법'에도 이용법·후기 공유 부쩍
전문가 "낙태법 폐지·약 합법화해야"

'위민온웹' 누리집 갈무리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ㄱ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절대로 안 된다."

대학생인 ㄱ씨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고, 타국에 사는 남자친구는 학자금을 갚아야 했다. ㄱ씨는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임신중절 수술은 원치 않았다. 수소문 끝에 ㄱ씨는 네덜란드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Women on Web)에 도움을 요청했다. 위민온웹은 한국처럼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의 임신 10주 미만 여성들에게 70~90유로(8만~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고 임신중절약을 제공하는 단체다.

위민온웹에서 임신중절약을 구하려면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리적·신체적으로 약 복용이 적절한지 묻는 25개 문항의 질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위민온웹 소속 산부인과 의료진은 ㄱ씨의 문진표를 토대로 적정량의 임신중절약을 처방했다.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몸 상태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 ㄱ씨는 약이 무사히 도착하는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한다. "'차라리 불법 수술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다가 잠에서 깬 적도 있어

갑 제7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요". 2~3주 뒤 알약 형태의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 한국의 ㄱ씨 집에 도착했다. ㄱ씨가 위민온웹에 공유한 자신의 사연이다. 합법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길이 없는 한국 여성들에게 네덜란드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이 피난처가 되고 있다. '임신중단'을 위해 '국경'과 '법'의 경계를 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것이다. 위민온웹이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한국 여성들의 상담이 3년간 4000여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500여명이 임신중절약을 제공받았다.

위민온웹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은 '안전한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1999년 설립됐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등 인공유산이 불법인 나라의 여성들을 네덜란드 국적의 배에 태워 공해상까지 나간 뒤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 시술을 해왔다. 이 단체가 제공하는 임신중절약은 67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필수의약품에 포함하기도 했다.

최근엔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민온웹의 이용법을 안내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계정도 등장했다. 에스엔에스에서 위민온웹을 알리고 있는 ㄴ씨는 "위민온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로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스텔싱(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것) 등 피해자를 도운 적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위민온웹을 통해 임신중절약을 구입하려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낙태죄뿐 아니라,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거친 임신중절약이 없어 위민온웹이 제공하는 임신중절약 복용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임신중절약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분명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낸 '임신중단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2006명의 여성 중 68.2%가 임신중절약 합법화에 찬성했다. 지난해 9월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3만명이 동의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핀란드나 스웨덴에서는 인공유산 중 약물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었다"며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약이 있는데도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하고, 더구나 불법이라는 꼬리표까지 뒤따라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임신중절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범죄자를 양산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울 기회라고 말한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의 박건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임신 9주 이하인 경우 임신중절약이 인공유산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고 검증된 환경에서 약물을 통한 인공유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중절약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원 녹색병원 과장(산부인과)은 "홈페이지 노출 폐쇄나 거래 단속과 같은 눈가림으로 임신중절약에 대한 수요를 막을 수 없다"며 "식약처의 관리, 의사의 처방 등을 전제로 임신중절약을 도입하면 안전한 의료 서비스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갑 제7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14 Jul, 2021

Thank you so much for your team support and great project, it seemed scary at first and it went really well for me. Hope this continue further and help many other women like me in future. I'm really grateful.
Thank you again.

23 Jan, 2021

해당 사이트에서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안도를 느꼈습니다. 또, 메일 상담이 매우 빠르고 친절히 이루어져 홀로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돕는 여성들이 존재함에 감사했고,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I really appreciate what you are doing for women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me. I also decided to do whatever I can to help other young girls after my experience with you. Thank you.

03 Sep, 2020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이런 단체가 있다는게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01 JUL, 2020

안녕하세요, Women on Web.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메스꺼움과 복통이 너무 심했기때문에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토로 인해 약의 효과가 잘 적용되지 않았을까봐 구토 후 3시간 뒤에 misoprostol 2정을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5분 후 4cm정도의 작은 태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약효가 나타날지 몰랐지만 약의 효과는 성공적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메스꺼움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배의 통증도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것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출혈이 며칠간 지속되겠지만 저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Women on Web 당신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 Jul, 2020

저는 코로나로 인해 배송이 얼마나 지연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기에 다른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했습니다. 병원에서 비밀리에 수술을 하였기때문에 큰 문제 없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0 Jun, 2020

오랫만입니다
저번주에 임신 테스트기로 음성을 확인하였고
피임약을 꾸준히 복용중입니다

갑 제8호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봄, 제출일시:2022.03.11 15:01, 출력자:장현재, 다운로드일시:2022.03.11 15:02

생리 예정일보다 피가 일찍 나와서 걱정했지만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피임약 휴약기입니다
생리 피는 아주 소량 나왔고 그 뒤에 멈춘 상태입니다
피임약을 다시 먹을 것이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중에라도 당신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갔다면 난 정말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이 되었지만 그때의 그대들의 메일은 우리에게 희망 같았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아프지 않길 내가 간절히 빌겠습니다
꼭 축복 받으세요 천사여!!

01 Jun, 2020

감사합니다. 괴롭고 죽을것만같았어요 안심했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라도 은혜갚고싶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8 Jun, 2020

정말 죽고싶을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금전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단체의 도움으로 기부금액수를 조정받아서 약을 받아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28 Nov, 2016

보내주신 약과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크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Women on web 을 알게된 건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친절한 도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역림용